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 유현동
- 제·개정 경과
- 2011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(KOSHA GUIDE C-8-2011)
-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지침(KOSHA CODE G-6-1999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기계기구 기타설비에 의한 위험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량철골 천장공사 중 발생할수 있는 추락, 전도, 베임,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량철골 천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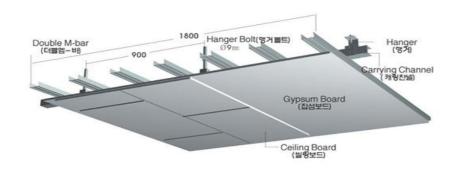
## 2. 적용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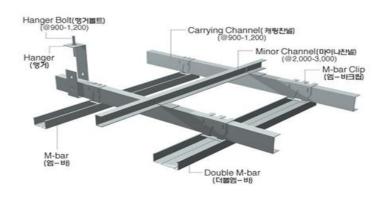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건축물 수장공사의 천장텍스, 석고보드,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공사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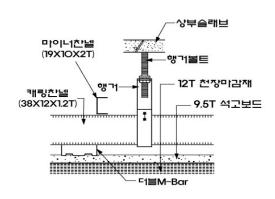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수장공사"라 함은 실내건축공사의 여러 공종 중에 최종 마무리 또는 설치물 작업단계로서, 건물 준공 후에 직접 외부로 나타나는 마감공사를 말한다.
  - (나) "경량철골 천장공사"라 함은 두께가 얇은 형강을 부재로 사용하여 천장틀을 형성하여 천장텍스, 석고보드 등의 천장 마감재를 부착하는 마감공사를 말하며, 경량철골 천장공사 공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.
    - (1) 강재 받침재에 의한 분류
    - ① M-BAR 공법
    - ② T-BAR 공법
    - ③ H-BAR 공법
    - ④ I-BAR 공법
    - ⑤ MODULET-BAR 공법 등

- (2) 천장 마감재에 의한 분류
- ① 석고보드 또는 암면흡음 천장판 공법
- ② PLANK 공법
- ③ TARTAN 공법
- ④ LOUVER 공법
- ⑤ TILE 공법 등
- (다) "M-BAR공법"이라 함은 매립형(Concealed-type)으로서 콘크리트 슬래브면 에 콘크리트 드릴로 구멍을 천공 후 "M"자 형상의 천장 받침재 등으로 천 장틀을 형성한 공법을 말하며, M-BAR 공법 부재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천장틀: M-BAR, 캐링찬넬(Carrying Channel), 마이너찬넬(Minor Channel)
  - ② 부속철물: 행거, 클립, 캐링찬넬 조인트, M-BAR 조인트, 벽 조인트
  - ③ 달대: 행거볼트, 너트, 인서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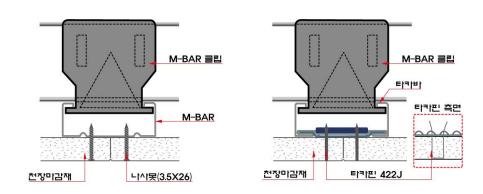


〈그림1〉M-BAR 공법 개요도



<그림 2> M-BAR 설치 상세도

(마) "석고보드 또는 암면흡음 천장판 공법"이라 함은 M-BAR 천장틀에 석고 보드 또는 암면흡음 천장판을 나사못 또는 타카 핀(Tacker Pin)으로 고정 하는 공법을 말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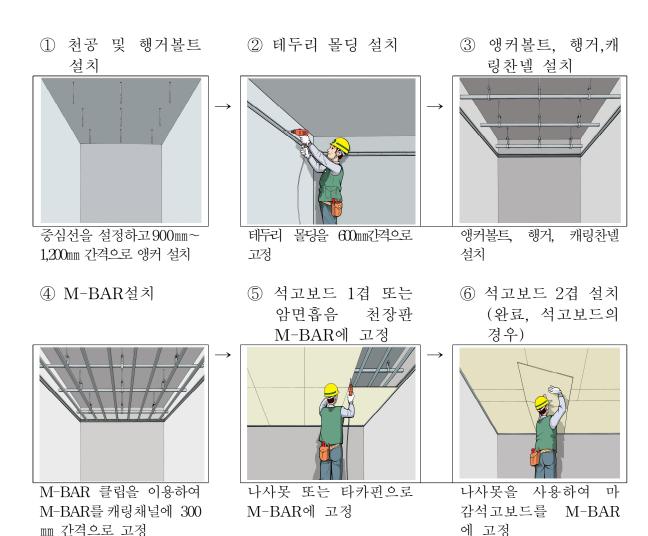
<그림 3> 암면흡음 천장판 공법 상세도

(바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경량철골 천장공사 일반사항

#### 4.1 시공순서

(1) 경량철골 천장공사 중 M-BAR 석고보드공법의 시공순서는 〈그림4〉와 같다.



<그림 4> M-BAR 석고보드공법의 시공순서도

#### 4.2 시공관리 일반사항

#### (가) 시공 전 관리사항

① 설계도서 등 자료 검토

- 설계도면, 시방서, 현장설명서 등 검토

③ 시공상세도 작성

→ ④ 작업계획 수립

- 공사기간, 자재반입계획 인원투입계획, 시공방법 등

⑤ 전·후 공종 및 타 공정과의 연관관계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작성

→ ⑥ 자재 반입 전 검수 실시

(나) 시공 중 관리 사항

①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시공방향 설정 → ② 견본(Sample) 시공

 $\rightarrow$ 

③ 본 공사용 자재 반입

- 자재반입 전 야적, 양중, 운반계획 수립

⑤ 공사 진행 중 시방서 및 작업계획에 의한 진행여부 확인

-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측

④ 선행 공종 관리

- 전선 누전여부, 균열 및 누수부위 등 확인

⑥ 시공완료 후 자재정리 및 청소상태 확인

# 5.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

- (1) 작업계획은 작업장의 제반 여건과 설계도서(설계도면, 시방서 등)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별 작업방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(2) 설치작업 전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계획서 수립 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  - (가) 운반경로, 운반물량, 차량 적재 및 결속방법, 상·하차 시 안전작업, 부재 적재장소 확보 등이 포함된 중량물의 취급작업계획, 차량계 하역운반기 계작업계획
  - (나) 작업층으로의 양중계획 및 층 내부 소운반 계획
  - (다) 근로자 동원 및 작업반 구성 등 공종별 인원투입계획
  - (라) 종류, 규격, 성능, 사용방법, 방호장치설치계획 등의 기계·기구 사용계획
  - (마) 공종별 안전가시설물 사용 및 설치계획(작업발판, 안전난간, 안전통로, 덮개, 사다리 등)

### KOSHA GUI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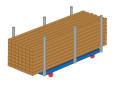
#### C - 17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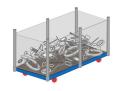
- (바) 근골격계질환 예방계획
- (사) 감전재해 방지계획(소요전기용량 산정, 가설전선 배선계획, 접지 및 누 전차단기 설치계획, 자동전격방지장치 부착 등)
- (아) 보호구 지급계획 (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, 방진마스크, 보안경 등)
- (자) 해체 시 해체방법·순서, 보강방법, 기계·공구의 선정, 해체물 반출 경로 선정을 포함한 해체계획 또는 폐자재 처리계획
- (4) 작업계획서는 공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는 작업책임자가 계획서의 내용에 의한 안전시공 실시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.
- (5) 기타 경량철골 천장공사에 따른 품질 및 시공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다.

## 6. 경량철골 천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

- 6.1 부재 운반 및 적재시 안전조치 사항
  - (1) 건설용 리프트, 고소사다리 차, 이동식크레인 등 작업에 적정한 양중장비를 선정하여 부재의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, 불필요 한 과다 반입과 소운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.
  - (2) 양중장비 선정 시에는 차량 진입동선 분석, 자재 대기장소 선정, 공정별 반입 자재량 결정, 자재 양중량 분석, 자재별 포장단위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자재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지게차·작업대차 등 양중 지원장비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.
  - (3) 건축물 내부 부재 소운반 시에는 <그림 5>와 같이 부재별 형상에 적합한 소운반 장비를 선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






판재(板材)

선재(線材)

부속철물

<그림 5> 층 내부 소운반 작업대차의 종류

(4) 부재 적재장소는 근로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타 작업에 간섭이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# 6.2 작업 전 확인사항

- (1) 당일 시공요구량 적정여부, 작업방법 및 순서, 타공정과의 간섭 여부 등 작업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방법, 새로운 기계·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건강상태, 적정한 개인보호구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 및 통로주변 개구부 등의 안전난간, 덮개 등 방호시설 설치여부와 통로의 바닥상태 등을 확인하고, 안전표지(금지, 경고, 지시, 안내)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드릴, 절단기 등 기계·기구의 방호장치 손상여부 및 부착상태 확인과 외함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가연성·인화성물질 제거, 밀폐공간 환기, 유기용제 사용법,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 등 화재예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6.3 경량철골천장틀 설치작업

(1) 자재운반 작업시에는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운반물 무게의 적정성이 유지(남자 20~30kgf, 여자 10~15kgf이하)되어야 하며, 5kgf이상의 자재를 들어

### KOSHA GUIDE

C - 17 - 2011

서 운반하는 경우 취급물품에 대하여 작업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.

- (2)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작업발판 설치 시에는 KOSHA GUIDE C-8-2010(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 지침)의 규정에 따른다.
  - (나) 작업발판 설치 전 작업장소는 정리정돈하여야 한다. 자재 정리정돈 시에는 합판, 석고보드, M-BAR 철물 등은 난간 또는 가시설물에 기대어 세워두지 않아야 하며, 긴면이 바닥과 접하도록 하여 받침목을 대고 바닥에 눕혀 적재하여야 한다.
- (3) 앵커, 행거, 달대, M-BAR 등 경량철골천장틀 설치작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천장 먹놓기 작업 시에는 이동식비계 등을 사용하고, 사다리를 사용하여 서는 안된다.
  - (나) 철물작업 시 손의 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
  - (다)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시에는 천장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,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여서는 안된다.
  - (라) 전동드릴 사용시에는 드릴비트의 용도 및 드릴비트가 빠지지 않도록 작업 전 확인하여야 한다.
  - (마) 앵커 설치를 위한 드릴작업 등 상향 작업시에는 보안경과 안전모를 항 상 착용하여야 한다.
  - (바) 절단기 사용시에는 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 초과 사용을 금지하고, 방호장치의 부착을 확인하여야 하며,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티 비산방지설비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(사) 타정 총 사용 시에는 철물의 두께 및 바탕면의 재질을 확인하고, 눈높이 에서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아) 타정 총 등 화약을 사용하는 공구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.

## 6.4 천장재 부착작업

- (1) 천장재는 상, 하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고정 전에 공구를 잡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뒤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나사못으로 천장재 고정 시에는 대각선으로 고정 후 나머지를 고정하여야 하며, 양손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타카 건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하며, 이동시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(4) 공기압 타카 건 사용 시에는 공기압축기 등 압력용기 반입 전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타카 건 사용 시에는 해당 제조사에서 정하는 메뉴얼을 숙지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6) 타카 건 사용 시에는 낙하격발안전장치, 방아쇠안전장치, 밀착압력장치 등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



밀착압력장치



1차 방아쇠

<그림 6> 타카 건 안전장치

## KOSHA GUIDE

C - 17 - 2011

- (7) 천장재 고정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, 천장재 부착작업 시에는 뒤로 물러나며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전동드릴 사용 시 손목이 비틀리지 않도록 단단히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며, 천장재 절단 시에는 길이를 측정하여 하부에서 절단 한 후에 천장 고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9) 머리위에서 행하는 작업은 연속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, 드릴 등의 기계도구는 가능한 연장도구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근골계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6.5 경량철골천장틀 해체작업

- (1) 경량철골천장틀 해체 시에는 천장 전체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2) 경량철골천장틀 해체 시에는 천장재 제거, 설비·조명기구의 보양, M-BAR, 행거 제거, 달대 제거 등 설치순서의 역순으로 해체하여야 한다.
- (3) 통로, 작업발판 상부의 해체물은 발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- (4) 해체 시에는 안전모, 안전화, 방진마스크, 보안경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한다.